문서번호	행정지원과-32209
결재일자	2014.11.1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인사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			
김소영	윤이남	김진동	11/17 <b>손정수</b>			
협 조	감사담당		임근	<b>크</b> 수		
	총무담당	현병구				

2014년도 하반기

#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

2014 . 11.

행 정 국행정지원과

### 2014년도 하반기

## 휴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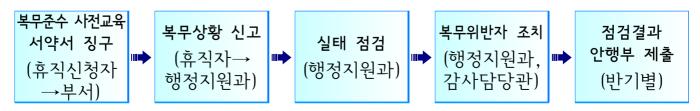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이 개정('13.5.6) 이후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복무실태를 점검코자 함

### **1** 추진 근거

- 「**지방공무원법」제63조**(휴직)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8조의17(휴직자 복무관리 등)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, '13.6.13)
- **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계획**(행정지원과-22174호, '13.8.5)

### **2** 점검 방향

-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복무실태 중점 점검
  - 휴직 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
  - 휴직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 금지
-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신고서 징구와 함께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병행
- 휴직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의결 조치



### **3** 점검 개요

○ 점 검 일 : '14. 11. 19(수) ~ 12. 2(화), 14일간

○ 점검대상 : 총 62명

- '13.5.6이후(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) 이후 휴직 또는 휴직연장 공무원으로

- 법 제63조제1항1호(질병)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(해외유학, 연수, 육아, 가병, 배우자동반) 의해 '14.11.17현재 휴직중인 공무원

구분	계	요양	유학	연수	육아	가사·간병	배우자동반
계	62	11	1	0	47	0	3
행정직군	52	11	1	_	38	_	2
기술직군	10	_	_	_	9	_	1
관리운영직	0	_	_	-	-	_	-
별정직	0	_	_	_	_	_	_
임기제일반직	0	_	_	_	_	_	_

○ 점 검 자 : 6명(직렬별 담당자)

행정직군	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	별정직	임기제일반직
전영훈, 김소영	박기훈, 나예주	허성재,	원유경

#### ○ 점검방법

휴직자가 제출한 복무상황 신고를 기초로 점검하되,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
 의심 가는 자는 현장점검 병행

○ 점검사항 :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

- 비상연락망 점검(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)
- 휴직 전 사전교육(소속부서장 시행) 실시 여부
- 휴직자 개인별 복무상황 보고서 직접 작성·징구

- ※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에 따라 모든 종류의 휴직은 11월 보고대상임
- 휴직별 중점 점검 사항 및 추가 증빙서류
  - ▶ 질병휴직 : 진단서, 출입국 사실증명 등
  - ▶ 해외유학휴직 : 출입국 사실증명, 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여부 등
  - ► 육아휴직, 가사휴직 : 육아나 간병과 상관없는 해외 체류 여부, 영리 업무금지 의무위반(개인사업종사) 등
  - ▶ 배우자동반휴직 : 출입국 사실증명 등
- 증빙서류 추가 확인후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
  - ▶ (예시) 가사휴직자 소등증명원 징구 후 소득있음이 확인되는 경우

## 4 행정 사항

- 부서 협조사항 : 휴직 예정자 사전교육 및 서약서 징구
  - 휴직신청 공문 제출 시 사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제출
- 향후계획: '15년도 상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실시 '15.5월

- 붙임 1. 관련규정 1부.
  - 2.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양식 1부
  - 3.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 양식 1부.
  - 4. 서약서 서식 1부. 끝.

##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관련 규정

## 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- 제38조의17(휴직자 복무관리 등) ① 임용권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3.5.6〉
  -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<u>휴직 중인 공무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</u>. 〈신설 2013.5.6〉

### □ 「**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**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16호, '13.6.13)

#### 사. 휴직자의 복무관리(임용령 제38조의17)

-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의 정의
  - "휴직의 목적 외 사용"이라 함은 "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"를 말함

#### ○ 휴직 실태점검

-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,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.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함
-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,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, 7월 15일까지 붙임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#### ○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

- 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붙임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,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,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함. 다만,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#### ○ 휴직내용 심사 및 검증

- 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함
  -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
  -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
  - 고의성 여부
  -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
  -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,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
- 임용권자는 심사결과,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,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
- 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

#### ○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8조의17 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(2013.5.6.) 이후에 휴직하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함

## 휴직자 근무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

□ 직군명 :	00조	군
---------	-----	---

□ 자체점검 개요

가. 점검기간 : 2014. . . ~ . ( )

나. 점검인원 : 5급 000외 명

다. 점검대상 : 총 명

구분	계	요양	유학	연수	육아	가사·간병	배우자동반
계							
행정직군							
기술직군							
연구·지도직							
관리운영직							
임기제일반직							

라. 점검내용 :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,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, 휴직의 충실성 여부(학점이수상황 등) 등 휴직 전반

□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(해당시 작성, 작성예시)

소 속	적발 인원	휴직 종류	조기계 시민사례 시 조기계 조기계 기계 기		조치결과	비고
	0명	육아 휴직	휴직 종료 후	•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	<ul> <li>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</li> <li>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정직 1월)</li> <li>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</li> </ul>	
	0명	유학 휴직	휴직 종료 후	• 휴직사유 종료(학기 미등록)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 외에서 체류 중	•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 • 성과급 최하위 부여	
	0명	육아 휴직	휴직 중	•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(개인사업종사)	•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 •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(견책)	
	0명	가사 휴직	휴직 종료 후	•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 가량 해외 체류	<ul> <li>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, 육아휴직 수당 환수</li> <li>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</li> </ul>	

\*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(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)에 대해 작성

#### □ 기타 건의사항 등

\* 안행부에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 조식으로 작성

##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서

1. 소 속	00-	00국 00과					
2. 직 급							
3. 성 명(생년월일)	홍 길 동 (1975년 12월 25일생)						
4. 휴직종류	질병	병휴직/ 육아휴직/ 유	유학휴직/ 가사휴직	등			
5. 휴직기간	201	13.00.00 ~ 2014.00	.00 (0년0월)				
6. 휴직실적	최근	근 5년간 사용한 휴객	직 종류 및 기간,	횟수 등을 기재			
7. 보수 수령여부	<b>*</b>	보수(봉급,수당) 수령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※ 보수 지급휴직 : 공무상질병휴직, 유학휴직, 육 아휴직(1년 범위)					
	해외	ㅣ 체류사실(□해당됨,	, □해당 없음)				
8. 해외체류 여부	해 당	·   X					
	시	해외거주가	② 체류기간	개월			
		필수가 아닌 경우	③ 체류목적				
	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(□가능, □불가능)						
9.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	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 (해당시) □ 1월 미만, □ 1월 이상~3월 미만, □ 3월 이상~6월 미만, □ 6월 이상~1년 미만, □ 1년 이상						
	③ 고의성(□해당됨, □해당 없음)						
	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(□허용, □불허용)						
		기타 휴직 목적에 현		됨, □해당 없음)			
10. 휴직자의 복무상황	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※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	
		년 월	일				
	휴	직자 성명	(인)				
		(임 용 권 자)	귀하				

서 약 서

소 속:

직 급:

성 명: (한자: )

주민등록번호 :

본인은 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겠습니다.
- 2. 휴직기간 중 \_\_개월마다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기관(부서)장에게 신고 하겠습니다.
- 3.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지 않겠으며,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시복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겠습니다.
- 4.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복직하겠으며, 30일 이내에 복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성북구청장 귀하